

## 거창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0 ~
----------	--------

제출연월일	2010. 1. .
제 출 자	거창군수

###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일부 규정이 법령의 내용과 불일치하여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목적조항을 간명화 하고,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1조).

-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 「지방자치법」
- 주민의 감사청구에 필요한 연서 대상 주민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근거조항이 제13조의4에서 제16조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현행 법률에 맞게 정비함(안 제1조, 제2조).

-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 「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

다. 「지방자치법」에서 개정된 주민의 감사청구권 연령에 맞게 하향 조정함(안 제2조).

- 감사청구인 연령 조정 : 20세 이상 → 19세 이상

###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2) 입법예고 : 생략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거창군 조례 제 호

### 거창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에 따라”로, “감사청구와 그 시행”을 “감사청구에 필요한 연서 대상 주민수”로 한다.

제2조 중 “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에 따라”로, “주민의 수는 20세이상 주민중”을 “19세 이상의 주민수는”으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 ----- 감사청구에 필요한 연서 대상 주민수----- -----.</p>
<p>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 의 수는 20세이상 주민중 200명 이상 이어야 한다.</p>	<p>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 ----- 19세 이상의 주민수는 ----- -----.</p>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 <2006.1.11 개정되기 전>

**제13조의3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①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4에서 "20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20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20분의 1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5.1.27>  
(이하 생략)

**제13조의4 (주민의 감사청구)** ①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제1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시·도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5.1.27>

1.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와 제13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제13조의5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이 계속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이하 생략)

<2007.5.11 전부개정 후 현행 법률>

**제15조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①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19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시·도와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4.1>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이하 생략)

**제16조 (주민의 감사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와 제17조제1항에 따라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이하 생략)